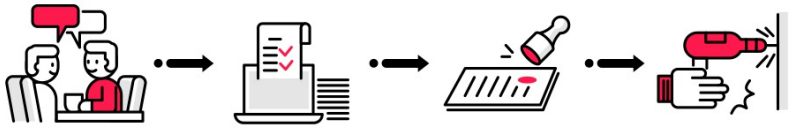
간판 허가(신고)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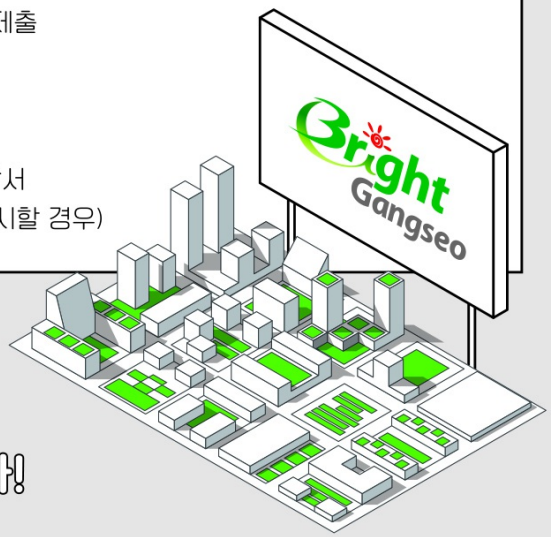


구청 담당자 사전협의 → 신청서 제출 → 허가(신고) 및 신고필증 발급 → 광고물 제작·설치

- 문의 : 051-970-4282
- 서식참조 : 홈페이지(www.bsgangseo.go.kr) ❯ 자주찾는 메뉴 ❯ 옥외광고물 ❯ 간판허가(신청) ❯ 명지국제신도시 내 간판설치안내
  ※ 허가 신청 및 신고는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.

구비서류

※ 신고대상 광고물은 1, 4번만 제출
① 신청서(신고서)
② 표시장소의 원색사진
③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
④ 소유자 및 관리인의 사용승낙서
(타인 소유 토지나 물건에 표시할 경우)



명지국제신도시 내
전광류 광고물 금지!
팔지도 사지도 맙시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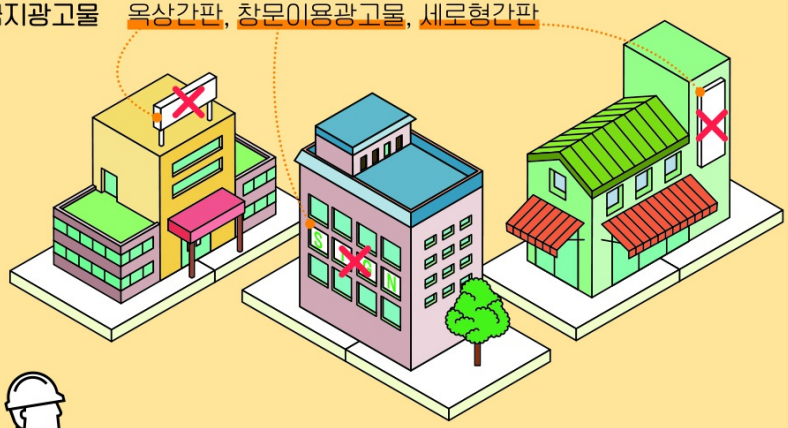
강서구청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
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광류 간판을 특별단속 중입니다.

※ 불법간판 철거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
최대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, 연 2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

- **간판 총수량** 1업소 1개 간판
- **예외**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나,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
  › 벽면이용간판 1개 추가 가능
- **금지광고물** 옥상간판, 창문이용광고물, 세로형간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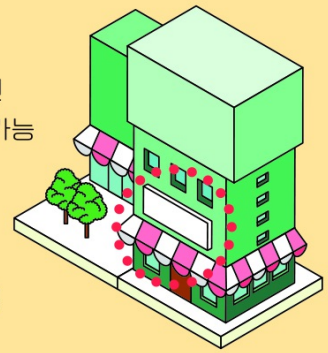
명지국제신도시에서 허용되는 간판의 종류

① **벽면이용간판**(건물의 벽면에 주로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)
② **돌출간판**(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)
③ **지주이용간판**(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)

벽면이용간판

- **5층 이하 설치**
  - 4~5층은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
  - 3층 이하 벽면에 면적 5㎡ 이하인 벽면이용간판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 (간판 총 수량에는 포함)
- **가로** : 해당업소 벽면 가로폭의 80% 이내, 10m 초과 금지(6m 초과시 입체형으로 표시)
- **세로** :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의 80% 이내 (입체형 80cm, 판류형 1m 이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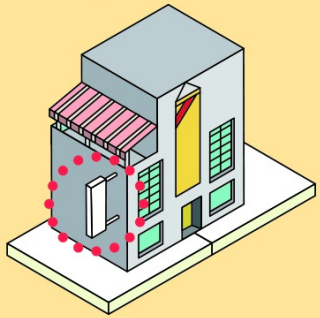
※ 단독주택용지 : 근린생활시설에 한함, 1층에만 설치 가능



돌출간판

- **하나의 업소에서 1개 설치 가능**
- **10층 이하 설치**
  (건물 최상단 설치 금지, 2층 건물일 경우 2층에 설치 가능)
- **가로** : 건물벽면에서 1.2m 이내
- **세로** : 3m 이내
- **지면에서부터 간판 아랫부분까지 4m 이상 확보**
  (보도가 있을 경우 3m)
- **메뉴, 가격, 실물사진 표기 불가**

※ 단독주택용지 : 근린생활시설에 한함, 세로 2m 이내



지주이용간판

- **5층 초과 건축물**에 한해
  연립형식(종합안내판)으로 된 1개만 설치
- 건축물 주출입구 좌측 또는 우측 중 **건축한계선에서 1m 이내**에 설치
- **높이** : 지면으로부터 5m 이내
  1면의 면적 : 5㎡ 이내

